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12일,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윤 의원)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

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현행법 제13조는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보유하던 마약류를 반드시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마약류를 직접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격 상실자의 재고 마약류 처리 방식을 다변화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허가를 받거나 폐업등을 신고하고 있고,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고 폐업등을 신고하고 있는데,
-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현행법상 별도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류취급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각 개별법과 별개로 현행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게 할 경우 동일한 신고 행위를 반복하게 하여 중복 규제가 될 소지

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임을 고려할 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마약류 취급 권한이 없으므로 주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의원)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에도 마약류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의료법」 등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이 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의제하도록 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적용례

를 부칙에 두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각각 「의료법」, 「약사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와 행정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해소하고, 마약류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을 폐업 시 마약류 처분에 대한 의무주체에서 제외하여 의무의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며,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안의 신설 규정에 대한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각각 「의료법」, 「약사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수정함(안 제8조제2항).
- 나.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주체에서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을 제외함(안 제8조제3항).

다.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폐업신고 의제 규정
신설 및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의 보고의무 신설에 따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제5호 중 “취급하던”을 “보유하고 있는”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작”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휴업 또는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휴업등”이라 한다)하는 사실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폐업등을”로, “휴업등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폐업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휴업등”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폐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휴업등”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폐업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휴업등”을 “폐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을 “마약류취급자는”으로 한다.

안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11조 및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본문 중 “양도하고 그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양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를 “폐기·양도”로 한다.

②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양도한 마약류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제11조제1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안 제64조제2호 중 “제11조제1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생략)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② ----- ----- ----- ----- ----- -----.	②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u>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u>	5. ----- ----- ----- <u>취급</u> <u>하던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u>	5. ----- ----- ----- <u>보유</u> <u>하고 있는</u> ----- ----- -----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6.·7. (개정안과 같음)

<u>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u>	<u>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휴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u>	----- --.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1. ----- ----- ----- -----<u>휴업등</u>----- -----	1. ----- ----- ----- -----<u>폐업등</u>----- -----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신 설>	2. ----- ----- ----- --<u>휴업등</u>----- -----	2. ----- ----- ----- --<u>폐업등</u>----- -----
<신 설>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휴업등을 신고한 경우	3. ----- ----- ----- ----- ----- <u>폐업등</u>----- -----
<신 설>	③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	③ 마약류취급자는 ----- ----- -----

	<u>려는 경우 폐업신</u> <u>고 당시 보유하고</u> <u>있는 마약류의 현</u> <u>황 및 처분계획을</u> <u>총리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해당 허</u> <u>가관청에 제출하여</u> <u>야 한다.</u>	----- ----- ----- ----- ----- -----.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 <u>⑦</u> (개정안과 같음)
<u>④</u> 허가관청의 장 은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또는 <u>제3항</u> 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 면 신고를 수리하 여야 한다.	<u>⑤</u> ----- ----- ----- <u>제4항</u> ----- ----- ----- ----- -----.	
<u>⑤</u> 제1항을 위반하 였거나 제2항에 따 른 폐업신고 또는 <u>제3항</u> 에 따른 신고 를 수리한 경우에 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u>⑥</u> ----- ----- ----- <u>제4항</u> ----- ----- ----- -----	

상실한다.	-----.	
⑥ 허가신청은 제5	⑦ -----제6	
항에 따라 마약류	항-----	
취급자 또는 원료	-----	
물 질수출입업자등	-----	
의 허가 또는 지정	-----	
의 효력이 상실되	-----	
었거나 제44조에	-----	
따라 마약류취급자	-----	
또는 원료물질수출	-----	
입업자등의 허가	-----	
또는 지정의 취소	-----	
처분을 하거나 업	-----	
무의 정지처분을	-----	
하였을 때에는 총	-----	
리령으로 정하는	-----	
바에 따라 마약류	-----	
취급자 또는 원료	-----	
물 질수출입업자등	-----	
명부에 그 사항을	-----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마약류통합	제11조의2(마약류통합	제11조의2(마약류통합
정보관리센터) ① -	정보관리센터) ① -	정보관리센터) 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장은 제11조에 따	---제11조(제13조	---제11조 및 제13
라 보고받거나 제1	제2항에서 준용하	조제2항-----

가 제8조 및 제44	-----	-----
조에 따라 마약류	-----	-----
취급자 자격을 상	-----	-----
실한 경우에는 해	-----	-----
당 마약류취급자·상	-----	-----
속인·후견인·청산인	-----	-----
및 합병 후 존속하	-----	-----
거나 신설된 법인	-----	-----
은 보유하고 있는	-----	-----
마약류를 <u>총리령으</u>	----- <u>총리령으</u>	-----
<u>로 정하는 바에 따</u>	<u>로 정하는 바에 따</u>	-----
<u>라 해당 허가관청</u>	<u>라 해당 허가관청</u>	-----
<u>의 승인을 받아 마</u>	<u>의 승인을 받아 폐</u>	-----
<u>약류취급자에게 양</u>	<u>기하거나 마약류취</u>	-----
<u>도하여야 한다. 다</u>	<u>급자에게 양도하고</u>	----- <u>양도하여야</u>
만, 그 상속인이나	<u>그 내역을 식품의</u>	-----.
법인이 마약류취급	<u>약품안전처장에게</u>	-----
자인 경우에는 해	<u>보고하여야 한다.</u>	-----
당 허가관청의 승	-----	-----
인을 받아 이를 <u>양</u>	-----	-----
<u>도하지</u> 아니할 수	-----	-----
있으며, 대마재배자	-----	-----
의 상속인이나 그	-----	-----
상속 재산의 관리	<u>폐기·양도</u> -----	-----
인·후견인 또는 법	-----	-----
인이 대마재배자가	-----	-----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
도에 한정하여 제6
조제1항제5호에 따
른 허가를 받은 것
으로 본다.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에 관하
여는 제11조제1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
자 또는 마약류취
급승인자”는 “자격
을 상실한 마약류
취급자·상속인·
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
나 신설된 법인”으
로 본다.

②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
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
는 마약류를 폐기
하거나 양도한 경
우에는 폐기·양도
한 마약류의 품명
·수량·취급연월
일·구입처·일련
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
도의 경우로 한정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를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략)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3조(벌칙) ①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조제1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u>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③ ----- ----- -----폐기·양도 ----- ----- ----- ----- ----- ----- ---. ④ (개정안과 같음) 제63조(벌칙) ① ----- ----- ----- ----- ----- ----- 1. ~ 5. (개정안과 같음) 6. 제11조제1항----- ----- ----- -----
---	--	--

3. ~ 20. (생략)	3. ~ 20.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하지 아니한 자</u> 3. ~ 20. (개정안과 같음) 부칙 <u><삭제></u> <u>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u> <u>제2조(폐업등의 신고 에 관한 적용례)</u> <u>제8조 제2항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 의사법」 제18조 에 따라 동물진료 업의 폐업등을 신 고한 경우부터 적 용한다.</u> <u>제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 한 적용례) 제13조 제2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 후 제13조제1항의</u>
----------------------	---	--

		<u>개정규정에 따라</u> <u>해당 허가관청의</u> <u>승인을 받은 경우</u> <u>부터 적용한다.</u>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을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1조 및 제13조제2항”으로,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마약류취급자”를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양도하지”를 “폐기·양도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양도”를 “폐기·양도”로 한다.

②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양도한 마약류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64조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9조제1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

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생략)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②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u>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u>	5. ----- ----- <u>보유하고</u> <u>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u> -----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생략)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	② ----- ----- ----- -----

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2.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④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

1. 2. (현행과 같음)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한다.

⑤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

⑥ -----제4항-----

⑦ -----제6항-----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제11조 및 제13조제2항-----제13조제3항-----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 ⑦ (생략)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

-----.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

-----폐기하거나 마약류취
급자-----.

-----폐기·양
도하지-----

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생 략)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

-----.

②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양도한 마약류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폐기·양도-----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 ----- ----- -----.
1.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1. 제8조제6항-----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①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0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11. ~ 17. (생략)	11. ~ 1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 ----- ----- -----.
1. 제8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제4항-----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 20.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10. (생 략) ② (생 략)	<u>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u> 3. ~ 20. (현행과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 ----- ----- -----. 1. -----제4항----- ----- 2.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